

의쟁투 허위광고 및 폐업투쟁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

2000. 6. 2.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강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기독교청년의료인
회/녹색소비자연대/민주노총/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서울YMCA/서울장애인
연맹/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21세기생협연대/장애우권익문제연구
소/전국농민회총연맹/참여연대/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한국농업
경영인중앙연합회 등 16개단체

- 순 서 -

1. 인사말

- 전동균 공동대표 (건강연대 집행위원장)

2. 의협 및 의쟁투 허위광고에 대한 공정위 신고

- 이덕승 운영위원장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3. 성명서 낭독

- 송보경 공동대표 (소비자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공동대표)

4. 질의 및 응답

신 고 장

신 고 인	단 체 명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대 표 자	공동대표 이석연	
	주 소	서울시 중구 정동 15-5 정동빌딩 별관5층	
	전화번호	02) 771-0376	
피 신 고 인	1	단 체 명	대한의사협회
		대 표 자	김재정
		주 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
		전화번호	02) 794-2474
	2	단 체 명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대 표 자	신상진
		주 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
		전화번호	02) 793-6317
신 고 내 용	<p>의약분업은 약물오남용을 방지하고 환자안전리를 확보할 뿐 아니라 왜곡된 의료 및 제약산업의 구조적 개혁을 가능케 하는 제도로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에서는 의약분업에 대한 신문지상 등의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통해 의약분업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할 뿐만 아니라 국민불안을 조성케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약분업에 대한 반대여론을 형성하여 의약분업 반대의 명분을 마련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조 1항 1호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와 의권쟁취투쟁위원회를 공정위원회에 신고 합니다.</p> <p>허위 및 과장 광고의 내용과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p> <p>첫째, 의협 및 의쟁투는 의약분업이 되면 본인부담금이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부는 병의원의 본인부담금을 인하할 예정으로 본인부담금은 늘지 않습니다.</p> <p>둘째, 의협 및 의쟁투는 의약분업이 되어도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할 수 없다고 허위사실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전체 의약품 품목중 60%에 달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없이 조제할 수 없으며, 일반의약품 또한 소분판매 및 임의조제가 금지되어 의약품 오남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p>		

<p>신 고 내 용</p>	<p>셋째, 의약분업이 되면 국민이 불편해 진다고 과장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실시되더라도 병의원이나 약국이 없는 지역은 예외지역으로 선정하며, 주사제도 꼭 필요한 주사제의 경우 예외로 규정하고 사전처방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노인환자가 병의원과 약국을 왕래하는 일은 대부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p> <p>넷째, 의사가 성심껏 진찰을 하고 작성한 처방전과는 다른 약을 환자에게 줄 가능성이 있다고 광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사처방을 바꾸는 행위는 현 의약분업에서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대체조제의 경우는 또한 약효동등성을 인정받고 지역협의체에서 협의된 약만을 환자의 동의하에서만 다른 회사의 상품을 바꾸는 것으로 의사의 처방을 바꾸는 행위라 할 수 없습니다.</p> <p>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살펴보시기 바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p>
----------------------------	---

※ 첨부 : 의협 및 의쟁투 허위광고 내용 및 사실유무

의사단체들은 광고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과장된 사실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1. 의사단체는 의약분업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허위 광고>

- 1984년 목포에서 정부주도로 의약분업을 시범실시한 결과 의사, 약사, 시민 모두 다 불편만 느끼고 실패했던 제도입니다.(3.30일자 광고)
- 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허용은 사실상 약사의 진료행위를 보장해준 것으로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어긴 것. 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허용은 절대 허용할 수 없습니다.(4.6자 광고)
- 의사의 처방과 다른 약을 약사가 줄 수 있습니다. 약사가 의사의 동의 없이 다른 약을 바꾸어 조제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럴 경우 치료에 지장을 주거나 부작용의 위험도 큼니다.(11.22 대한의사협회 홍보전단)
- 의사가 성심껏 진찰을 하고 써 준 처방전과는 다른 약을 환자들에게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4.4일자 광고)

→ <진 실> 목포시범사업, 일반의약품 판매, 대체조제 등에 대한 위와 같은 선전은 허위 사실입니다.

- 목포시범사업의 경우 실패의 원인은 제도적 원인이 아니라 의사·약사의 비협조와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한 점, 강제로 실시되지 않은 점등이 그 원인입니다. 이를 마치 의약분업제도 자체의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일반의약품의 약국판매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의 대원칙은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하에 조제할 수 있게 하고 부작용이 적어 안전성이 충분한 의약품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모든 약을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 대체조제는 의사의 처방을 바꾸는 행위가 아닙니다. 의사의 처방을 바꾸는 행위는 변경조제로서 현 의약분업에서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대체조제는 의사의 처방 중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의 경우 다른 회사의 상품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대체조제의 경우도 정부가 약효동등성을 인정한 약에 의해서만, 그리고 지역협의체에서 협의된 약을, 그것도 환자의 동의하에서만 대체조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단체의 광고는 아무런

규제 없이 약사가 의사의 처방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2. 의사단체는 '의약분업이 되어도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할 수 없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허위 광고>

○ 현재 심각한 부작용이 많은 수많은 약들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방없이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의약분업안은 의약품 오남용을 전혀 막을 수 없습니다. (4.8일자 광고)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약분업(안)에는 여전히 약사가 마음대로 약을 지어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11.27자 광고)

○ 약사가 처방없이도 마음대로 약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11.22 대한의사협회 대국민 홍보전단)

○ 현재의 방안으로는 약의 오남용을 전혀 줄일 수 없습니다.(3.29 광고)

○ 현 의약품 분류로는 국민의 의약품 소비행태를 개선할 수 없습니다.(5.1자 광고)

→ <진 실> 전체 의약품 품목수의 60%에 달하는 전문의약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없이는 조제할 수 없습니다. 일반의약품 또한 소분판매 금지, 임의조제 금지 등으로 의약품 오남용은 막아집니다.

○ 항생제, 스테로이드 등 부작용이 심한 약은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투약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의약품 분류는 라니티딘, 로페린 등 미국이나 영국에서의 의약품 분류 상 일반의약품 분류로 되어 있는 의약품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는 등 선진국형태입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 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의 의약품 오남용은 방지됩니다.

○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하여도 충분히 안전한 약들입니다. 일반의약품은 약사가 판매할 수 있지만, 포장된 상태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임의조제를 막고 있습니다.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몰래 투약하거나, 의사의 처방을 수정, 변경, 추가하는 행위는 모두 약사법 위반이며,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약사면허박탈이라는 중벌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3. 의사단체는 '의약분업이 되면 국민이 불편해진다'는 내용을 과장하여 광고하고 있습니다.

<허위 광고>

○ 무릎이 아파서 주사를 맞아야 하는 노인환자에게 병원에 나와 처방을 받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주사약을 사와 다시 병원으로 와서 주사를 맞으라고 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 관절염을 앓는 수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아픈 무릎을 안고 병원과 약국을 헤매게 될 것입니다.

다.(4.4 광고)

○ 안그래도 아픈 환자가 불편해지기만 합니다.(5.29일자 광고)

○ 아픈 환자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받아 병원을 나와서 약국을 찾아가서 약을 사던가 또는 주사약을 사서 다시 병원으로 가서 주사를 맞아야 하는 등 아픈 환자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반대합니다.(3.24 광고)



그림 2. 대한병원협회의 홍보 전단 중에서



그림 3. 대한의사협회광고 (4.8)

→ <진 실> 우리나라의 대다수 지역은 충분한 수의 약국이 분포하고 있어 이렇게 해매도 다닐 일이 없습니다. 의사가 꼭 써야 할 주사제는 모두 예외로 규정되었고 사전처방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이 병의원과 약국을 왕래하는 일은 대부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입원환자, 응급환자, 중증장애인, 정신질환자등은 의약분업 예외환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약국이 없거나 병의원과 약국이 1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은 예외지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농촌지역의 약 70%가 예외지역입니다.

○ 주사제는 절대 다수가 먹는 약으로 바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주사제는 대표적인 오남용 의약품입니다. 주사제 중, 수술이나 처치에 필요한 경우, 예방주사, 항암제, 운반이나 보관상 주의가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로 규정되어 의사가 직접 쓸 수 있습니다. 전체 주사제의 70%가 예외입니다. 의사들이 감기환자에게 투여하는 항생제와 같은 불필요한 주사제를 먹는 약

으로 바뀌 주면 “노인 환자가 병의원과 약국을 왕복하는 불편”은 없어집니다. 사전처방제를 활용하여 병의원에서 직접 주사를 맞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4. 의사단체는 ‘의약분업이 되면 본인부담금이 늘어난다’는 허위사실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허위 광고>

○ 병원에서 진찰료와 처방료를 내고 약국에서 조제료와 약값을 또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내야 하는 돈이 지금보다 늘어납니다. (4.8일자 광고)

○ 의약분업이 되면 병원에서 진찰료 처방료를 내고 약국에서 조제료를 내게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보다 국민들이 내야하는 돈이 많아지며 의료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해집니다. (4.4일자 광고)

○ 정부는 의약분업으로 늘어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속이고 있습니다.(5.29일자 광고)

→ <진 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 현재는 병의원에 처방료 및 조제료와 약값 등을 모두 내지만, 의약분업 후에는 병의원에 처방료를, 약국에 조제료와 약값을 나누어 내는 것뿐입니다. 총액은 동일합니다.

○ 만일 처방료 조제료 등의 수가를 일부 인상하더라도, 보험자 부담을 늘려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할 것입니다.

5. 의사단체는 ‘정부는 재정지원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허위 광고>

○ 그런데도 정부는 의약분업에 필요한 재원을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놀랍게도 재정지원을 늘릴 계획이 없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4.8일자 광고)

○ 정부는 전혀 재정부담을 늘리지 않고 모든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기려 하기 때문이다.(3.29일자 광고)

○ 정부는 여전히 보험재정에 대해 정부지원을 늘릴 계획이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3.24일자 광고)

→ <진 실> 정부는 재정지원계획을 늘릴 예정입니다.

○ 정부재정지원 계획이 없다는 내용을 정부가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 여당은 금년도 지역의보 국고 보조금을 약 7천억원 추가 투입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임기내(2002년) 내에 국고 보조율을 50%로 올린다는 약속도 하고 있습니다.(별첨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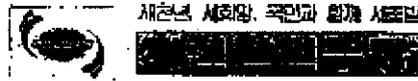
○ 우리 시민단체도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이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표 3. 의사단체들의 광고 내용

일자	제목	주장의 내용	광고주
99. 10. 26	의약분업 방안은 국민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 의약분업에서 병원 제외 ○ 의약분업에서 주사제 제외 ○ 임의조제 근절 ○ 시민단체의 약속 이행 촉구	사립대의료원 장협의회 · 국 립병원장회의 · 중소병원협 의회
99. 11. 27.	처방없는 조제허용 의약분업 하나하나 (11. 30. 장충체육관 집회를 알리며)	○ <u>완전한 의약분업 실시</u> ※ 의약분업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함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00. 1. 13.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의과대학에는 절대 지원하지 마십시오	○ 완전한 의약분업 실시 - 의보수가 인상 - 의보 진료비 삭감 반대	민주의사회
00. 2. 18.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2. 17. 여의도 집회를 사과하며)	○ <u>잘못된 의약분업 시점</u> - 의보수가 인상 - 의약품 재분류 - 의보재정 확충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00. 3. 24.	부실하면 반드시 무너진다!	○ <u>준비 안된 의약분업 철회</u> - 국민 부담, 국민 불편 가중 - 약화사고 대책 없음 - 의료보험체계, 의료전달체계, 의·약사의 업무범위, 의료이용관행, 의사와 약사의 인력 수급계획 등 선결 조건 먼저 해결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 위원회
00. 3. 27.	의약분업? 으약분업!	○ <u>강제적 의약분업 시행 중단</u> - 의보재정 확충 - 의약품 재분류 -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허용 - 처방전에 병명 기재 반대 - 교과서적이고 과학적인 진료가 가능한 의료환경 제시 - 비의료인의 불법의료행위 단속	민주의사회
00. 3. 27.	의사들, 왜 이 난리야? (동아) 의사들, 도대체 얼마나 더 벌려고 이 난리야? (조선, 중앙, 한겨레)	○ <u>잘못된 의약분업 철회</u> - 수가 인상으로 수입이 두배로 늘어도 잘못된 의약분업은 수용 불가. 이유는, - 의약품 분류 잘못 - 불법조제, 임의조제 근절 불가능 - 약화사고 책임 불명 ○ <u>완전한 수가계약제 실시</u> ○ <u>건강보험공단의 실사와 제심사 반대</u>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 위원회

일자	제목	주장의 내용	광고주
00. 3. 29.	우리국민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병원의 의약분업 시범 사업을 알리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00. 4. 4.	국민은 실험대상이 아닙니다!	○ <u>강제적 의약분업 시행 중단</u> ○ <u>의사에게도 투약 허용해야</u> - 약화사고 책임규명 - 의약품 재분류 -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허용 - 임의조제, 불법조제 근절 - 대체조제 반대 - 주사제 포함 반대	민주의사회
00. 4. 4.	성명서 - 정부주도의 시범사업을 강력히 촉구하며-	- 시범사업 실시	대한병원협회 장 노관택외 전국병원장 일동
00. 4. 6.	올바른 의약분업과 의권쟁취를 위한 전공의의 주장	- 보건복지부장관 퇴진 - 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허용반대 - 적정수가보장 - 의과대학 입학정원축소 - 의료정책에 대한 총체적 계획	대한전공의협 의회
00. 4. 8.	거짓말 개봉 84일전-7월 1일 사상최악의 영화 의약분업 개봉	- 국민부담증가 - 의약품 오남용 방지불가능 - 정부재정부담계획 부정 - 의료계 합의사실부정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 위원회
00. 5. 1.	우리는 완전한 의약분업을 원합니다.	- 일반의약품을 혼합판매 약사범조항 삭제 - 의약품 분류를 선진국 수준으로 - 의약분업 시행이전 시범사업실시	대한전공의협 의회 · 전국의 과대학 4학년 대표자협의회
00. 5. 27.	현정부의 의약분업 절대반대	- 선보완 후시행 - 주무책임자 처벌 - 폐업불사 강력투쟁 선언	대한개원의협 의회 2만여 회원일동
00. 5. 29.	의약분업 이런식으로는 안됩니다.	-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 - 의약품 오남용을 못 막는다 - 환자불편 - 의약분업 재검토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 위원회

<별첨 자료>



150-010 서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번지 가산빌딩 6층 전화 : 781-9116 / 팩스 : 781-8875

문서번호 : 정책 제2000-0019호
수 신 : 건강연대
참 조 :
제 목 : 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

1. 국민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귀 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우리 당 선거대책위 정책위원회는 귀 단체에서 공개 질의한 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문제에 대한 우리당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합니다.

다 음

1. 우리 당은 지역의료보험재정의 인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이에 우리 당은 올해 지역의료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예상되는 당기 적자규모를 정확하게 조사·연구하여 이를 국고로 지원할 방침임.
2. 우리 당은 의료보험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이를 위해 우리 당은 집권기간 내에 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율을 50%로 상향조정할 것임. 다만, 단계적 상향조정 등의 구체적 일정은 귀 단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할 것임.

2000. 3. 29.

새천년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 김 원 김(직인생략)

정부관계자 여러분!

의약분업 시행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일관된 행정지도를 촉구합니다. 의약분업은 정부주도가 아닌 시민사회단체, 의사, 약사가 자발적인 참여하에 도출해 낸 시민사회내 합의체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정부의 준비부족이나 이익집단과의 영합에 의해 좌초되는 일이 없기를 당부합니다.

의약분업에 대한 보다 확고하고 책임있는 행동을 바랍니다. 현 상황에서의 의약분업 모의테스트와 같이 의약분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약분업시행을 저지하려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 조금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약분업 시민운동본부>는 의약분업에 대한 정부의 준비상황과 대책에 관해 6월5일 대통령님과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시민사회단체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6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의약분업이 우리사회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료개혁과 국민건강권을 수호를 위해서, 6월 4일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으로, 6월 7일 전국 동시 캠페인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대대적인 국민홍보에 돌입할 것입니다. 의약분업 홍보를 통해 의약분업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그 간의 의료관행으로 인해 느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시민사회의 성숙으로 일구어낸 의약분업이 시행 한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은 분명 약 물오남용방지, 환자 알 권리확보, 의료비 감소, 의료 및 제약산업 구조개편 등 우리사회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약분업에 시민, 의약계, 정부가 적극 동참, 협조해 주실 것을 다 시한번 부탁드립니다.

2000. 6. 2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건강연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기독청년의료인회녹색
소비자연대/전국민주노동자총연맹/서울YMCA/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서
울장애인연맹/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청년한의사회/21세기생협연대/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